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안호영·김주영·한병도

박정현 • 복기왕 • 김윤덕

윤준병 · 신영대 · 박홍배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, 근로복지공단의 의료·재활사업 사용 목 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 나,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·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6조및 제2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27조제2항제1호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노동조합에 대한 감면)	제26조(노동조합에 대한 감면)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	
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	
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	
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수	
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.	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해	
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	
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	
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	
를 각각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9년 12월 31일</u>
면제한다.	
제27조(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	제27조(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
한 감면) ① (생 략)	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근로복지공단이 「산업재해	②
보상보험법」 제11조제1항제5	
호의2,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	
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	
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	
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	
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	
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	
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	

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	
경감한다.	
1.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취득	1. <u>2029년 12월 31일</u>
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	
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	
100분의 60)을 각각 경감한	
다.	